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

우편고지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(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)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
지금까지는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 정보(신상정보 포함)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.

그러나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 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되어 2011. 1. 1 부터는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(주소지는 읍면동까지)는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'성범죄자 알리မ်'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

성명	아무개
나이	33
키	170cm
몸무게	66kg
주민등록상 주소	아무개시 아무개구 아무개동 123번지
실제 거주지 주소	아무개시 아무개구 아무개동 123번지

성범죄 요지

대상자는 2011년 1월 아무개시 000(읍,면,동)에서 14세 미만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2011년 3월 17일 징역1년(집행유예 2년) 형을 선고받았음.

부가기록

유의사항

이 정보를 신문, 잡지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, 수정 및 삭제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, 주택, 사회복지시설의 이용,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하거나,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〈고지되는 정보의 예시〉
실제 고지에 사용되는 서식은
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.

〈우편고지 절차도〉



ㄱ (추진배경)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?

읍면동 관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, 재범 발생은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.

ㄴ (추진근거) 무슨 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가요?

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3)에 의한 것입니다.

ㄷ (주요내용) 우편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!

① (고지명령권자) 누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인가요?

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.

법원의 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 유죄 확정 판결시 함께 선고됩니다.

② (고지대상 성범죄자) 어떤 성범죄자가 고지되나요?

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

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.

③ (고지기간) 언제 고지받게 되나요?

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 일로부터 1개월 이내

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

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됩니다.

④ (고지정보)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?

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, 나이, 주소 및 실제거주지(상세주소 포함), 신체정보(키, 몸무게), 사진, 성범죄 요지, 전출 정보(성범죄자 전출시)가 고지됩니다.

⑤ (고지정보 수령) 고지정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함께 살고 있는 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(또는 세대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⑥ (고지명령 집행 절차) 고지명령 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?

법원에서 고지명령 판결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합니다.

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경찰관서를 경유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합니다. (*고지대상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자인 경우 우범부가 출소 1개월 전까지 고지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지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합니다.)

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를 등록한 후 고지정보서를 작성 우체국에 우편송부를 요청함으로써 고지명령 집행을 합니다.